

# 고속도, 국도, 지방도변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(코너) 설치 요구를 위한 건의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92. 7. 13

발 의 자 : 산업위원장

## 1. 주 문

- 도내 고속도, 국도, 지방도변휴게소 운영자와 협조 및 휴게소 허가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조건부로 전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것을 건의한다

## 2. 제안이유

- 도내 고속도, 국도, 지방도변의 27개의 휴게소에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수취가격 제고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

## 3. 참고 사항

" 없 음 "

## 0 高速道, 國道, 地方道邊 休憩所에 農産物 販賣場 (코너) 設置

### 1. 必要性

- 農産物 輸入 開放化에 따른 對備로 農産物의 販賣促進과 受取價格 提高로 農民 所得增大
- 消費者와 農民間의 直去來로 生産品의 新鮮度 維持 및 相互 信用去來 保障

### 2. 現況 (休憩所)

區 分	路 線	規 模				備 考
		計	大	中	小	
計	15 (個線)	27(個所)	11	4	12	
高速道	2	8	8			
國道	9	15	3	4	8	
地方道	4	4			4	

### 3. 建議要望

既히 施設 運營하고 있는 休憩所는 關係要路(許可 및 管理部署, 運營者)와 緊密한 協助를 求하고 以後 開設되는 休憩所는 許可時 (諒解, 協助事項) 條件附 設置를 原則으로 하여 多少 問題點이 있겠으나 農村과 農民을 위하여 必히 履行되도록 要望.